

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00년 5월 15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4 . 22 평창군수(기획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5. 15
- 다. 상정일자 : 제7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5.15)
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신대송)

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의거 군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 요 골 자

-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20세이상 주민 4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관련법률

지방자치법 제13조4(주민의 감사청구)

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

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

□ 내용검토

- 1999년 말 현재 평창군의 20세이상의 50분의 1의 주민수는 711명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다면 711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
- 감사청구 주민수를 711명 이상으로 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민이 감사청구 할 수 없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임
- 따라서 제도 도입취지나 또 주변의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.
- 평창군수가 제안한 감사청구 주민의수 400명 이상은 군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군민의 권리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답변자 : 기획실장 신대송)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400명으로 한 이유는?	○ 지방자치단체 20세이상의 주민에 50분의 1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711명으로서 711명에 적어도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400명으로 정하였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가. 찬성(이경진, 강석주, 우강호 위원)

- 연서 주민수를 축소 조정할 시 무분별한 감사청구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이 어렵고,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

나. 반 대(신교선 위원)

- 연서수가 많을 경우 본 제도의 입법취지가 벗어나고 유명무실 할 수 있으므로 평창군이 제출한 연서주민수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2000. 5. 15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. 신교선의원 수정동의

나. 수정이유

- 주민의 감사청구 확대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 수를 축소조정

다. 수정 주요골자

-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서수 400명을 350명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총재석위원 5명, 찬성3, 반대0, 기권2명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

붙임 : 수정안 1부.

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0년 5월15일

제 안 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현재 평창군이 제출한 400명선으로 유지할 경우 현행 입법취지가 사문화되어 제도시행의 효과가 없으므로 주민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조정

2. 수정주요골자

- 안제2조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“400명”에서 “350명”으로 조정

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2조중 “400명”을 “350명”으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제1조(생략)	제1조(원안과 같음)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지방자치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<u>400명</u> 이상이어야 한다	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----- ----- ----- <u>350명</u> -----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50명 이상 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